

#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과 성매매 비범죄화

## 1.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경과와 쟁점

### ○ 성매매 특별법이란?

-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함.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함.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해야 함.

### ○ 성매매 특별법 제정 배경

-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감금된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누전에 의한 단순화재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을 여성단체들이 '군산화재참사 대책위'를 꾸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요구. 2001년 부산, 2002년 군산 등으로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여성운동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이 본격화되었으며 대중적으로 성매매 여성 인권논의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배경.

-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었음. 성매매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던 윤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 성매매가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드러내지 못함. 또한 성 구매 남성이나 알선 업주보다 성 판매 여성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데 초점.

### ○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성판매 여성의 삶은?

- 2013년 성매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성 가운데 지금까지 1회 이상 성매매를 해봤다고 응답한 사람이 56.7%. 2010년에 비해 5% 늘어난 수치. 2010년 1년 동안 성매매 거래액은 6조 6천억 원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영화 산업 매출 1조 2천억 원의 다섯 배 이상 규모. 성매

수 경험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성매매 거래액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게다가 성산업이 음성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 밝혀진 것보다 그 규모가 더 크리라 짐작. 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성산업은 건재. 성매매를 축소시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실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성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처벌하다보니 점점 음지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성노동자들이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가게는 단속에 걸릴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로 조건만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위험합니다.”

“돈을 못받는 일이 많아요.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선 일이 끝나면 도망갑니다. 때리고 여자 지갑까지 훔쳐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완력으로는 남성을 이길 수 없잖아요. 성노동의 특성상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대일로 이뤄지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불법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어 위험 노출이 많겠다) 구매자들이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노동자들이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걸 약점 삼아 이용하는 겁니다. 성판매 여성 자기도 처벌 받잖아요. 게다가 창녀라는 사회적 낙인까지 감수해야 하니 누가 신고하려고 하겠어요. 진상손님들이 그걸 무기로 쓰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막해도 너는 신고 못한다는 그런. 폭력의 배경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 ○ 누가, 무엇에 대해, 왜 위헌심판을 제기했나?

- 위헌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성매매 남성과 여성은 모두 처벌대상이 됨.
-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된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됨. 김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경찰 단속에서 느낀 수치심과 모멸감이었다.”고 밝히며, 단속 나온 경찰로부터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알몸사진촬영을 당할 때, “‘나도 인권이 있는데’란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고 분노가 치솟았다”고 함. 이에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했고,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별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이 위헌제청사건을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함.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을 내리기위해서는 재판관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4월 9일 공개 변론을 진행했으며 위헌판결이 나면 법률 효력이 정지 됨.

## ○ 공개변론에서의 쟁점

합헌(찬성)	쟁점	위헌(반대)
성 거래, 성적자기결정권 영역 아님	성적 자기결정권	착취 강요 없는 성매매 처벌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건전한 성풍속 위해 필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정당성 없음, 형사처벌 부적합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므로 규제 필요성 있음	평등권 침해	축첩행위, 외국인 상대 현지처 계약 등과 처벌 달라 침해
자발적 성판매자만 처벌하므로 형벌권 최소화	침해의 최소성	자발적 성매매 처벌 대상 아님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 볼 수 없음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면 되는 문제지 법을 폐기하는 것은 답이 아님	실효성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 여전함

쟁점에 대한 코멘트=> 성판매 여성에 대한 처벌에 반대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것은 아님. 또한 성매매는 성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다른 성상품과 다르지 않음. 따라서 성 상품화 구조는 내버려 둔 채 성매매만 단속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님. 실효성의 측면에서 보면 성매매가 여전하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성판매 여성들이 불법적인 지위에 놓이면서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과 단속을 중단해야 함.

## 2.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과 입장

	성매매합법화	성매매 금지	선택적 비범죄화	비범죄화
성매매 관점	성적자기결정권	미풍양속 해침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	여성에 대한 구조적억압
성판매 여성	동등한 대상	윤락녀	피해자	성노동자
판매자처벌	합법	불법	비범죄화	비범죄화
구매자처벌	합법	불법	불법	비범죄화

### 1> 성매매에 대한 관점

#### ○ 왜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나?

- 성인 남녀가 성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성매매를 성적인 사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대등한 성인 남녀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취급할 수 없음. 이는 사장과 노동자의 거래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고 대등한 개인 간 계약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과 유사. 회사를 소유한 사장은 권력을 가진 반면 노동자는 해고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처지. 사장과 노동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는다고 보면 오히려 권리차이를 간과하게 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만 초래.
- 마찬가지로 성매매가 대등한 성인 남녀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입장을 따르면 왜 주로 여성이 성을 판매하는지, 왜 성매매 여성만 낙인과 차별에 시달리는지 인식할 수 없음. 단지

남성은 성을 구매할 권리가 있고, 여성은 성을 판매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귀결될 뿐. 남성과 여성이 성규범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상이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

### ○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비윤리적이었나?

- 고대 그리스에서는 성관계의 두 가지 유형이 있었음. 자손을 위해서 아내와 집에서 성관계, 바깥에서는 쾌락을 위해서 매춘부와 성관계. 성매매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니었음. 그러나 중세에는 육체가 경멸의 대상. 수도승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에 매질을 하고 가시옷을 입으며 무엇보다도 여자를 멀리함. 성행위 자체가 죄악. 결혼한 부부도 쾌락이 아니라 생식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성관계. 즉 성관계에서 쾌락이 지워지고 생식의 목적 하나만 남음(성관계-쾌락=생식). 근대로 접어들어 중세적 금욕관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연애결혼이 점차 대세가 되면서 사랑+결혼+성관계의 새로운 조합이 등장. 성관계를 즐기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반드시 합법적인 부부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 피임법의 발명 이후 성관계가 생식의 목적으로부터 분리. 순수 쾌락으로서의 성관계가 출현. 성관계-(생식+결혼)=쾌락.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사랑+결혼+성관계라는 도식에 기반 하여 결혼 밖의 성행위에 대한 낙인을 찍음. 즉 성매매가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근대 이후에 등장한 결혼과 사랑 성관계가 결합된 관념에서 비롯됨. 하지만 이러한 성윤리관이 특권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 ○ 성매매는 강간과 다를 바 없나?

- 성매매와 강간은 다를 바 없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이며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이므로 법으로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인신매매와 성매매는 다르며,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간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모든 성매매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여성의 성이 거래되는 일이 성매매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과 같은 극단적 폭력으로 보는 것은 성매매가 성기결합 성관계를 한다는 점에서 성상품화와 다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 즉 성을 거래 행위에 심각하거나 덜 심각한 위계가 있다는 의미로, 성관계를 특권화하여 친밀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비인간적이라는 관점을 내재함.

- 성판매는 성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일상적으로 접하는 연예인이나 나레이터 모델 등 역시 유사한 성격을 가짐. 성적인 매력과 보상이 거래된다는 점에서는 심지어 결혼도 마찬가지임. 결혼대상으로 남성은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우선순위로,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일반적임. 여성들은 좋은 신랑을 물색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매력을 높이는 투자를 아끼지 말라고 독려 받음. 부양능력이 뛰어난 남성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 이는 여성의 성이 거래되는 여성억압의 구조를 드러내는 현실임. 그러나 성판매를 극단적 폭력인 강간과 같은 행위라고 보는 관점은 성관계에 대한 특권적인 관념에서 비롯되었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내밀한 성행위가 아닌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거래를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임.

- 왜 친밀함이 전제되지 않은 성관계는 인격적 손상을 유발한다고 보는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특권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관계는 친밀감을 전제로 한 행위만 바람직하고 대가성이 있다면 부도덕하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근대 이후 결혼과 사랑 그리고 성관계가 결합된 성 윤리관에서 탄생함. 오랜 역사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 상류층에게 결혼은 부를 유지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사업, 평범한 농민과 노동자는 생존을 위한 노동의 동반자를 구하는 것이 목표. 그러나 부르주아는 결혼을 동등한 개인들이 행복

을 위해 맺는 계약으로 간주. 이러한 발상은 자유주의 이념으로부터 영향.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고 통치자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 남성과 여성의 관계도 지배와 복종이 아니라 평등한 개인들의 사랑을 기반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생각.

-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공동체를 위해 교환되던 여성들은 근대에 이르러 낭만적 사랑의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 거듭나고 싶어 함. 교환되기보다 사랑으로 선택받는 인격이고자 했고, 임신과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결실이며 보상이기를 원함. 남편과의 동반자적 관계, 자애가 우선시 되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여성은 가정이라는 왕국의 적어도 왕비의 위치는 될 수 있었음. 특히 모성을 칭송하면서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높아짐.
-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여성의 남성과 동등해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사적인 애정관계와 달리 여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교육, 고용, 재산권, 투표권이 없는 상태로 남성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 여성의 자신에게 할당된 가족이라는 영역을 벗어나 남성의 전유물인 공적인 영역에 참여를 시도한다면 경멸과 모욕의 대상으로 전락함.
- 사적 영역 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평등을 바라던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인정받았던 가정의 관리자는 여성이라는, 사적영역에서 그나마 여성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공적인 영역에서 시민권 확보 운동을 펼침. 즉 사적영역으로 밀려난 여성들에게 부부관계에서나마 보장된 남성과의 평등한 관계가 권리신장의 중요한 보루가 됨. 이에 따라 성매매는 낭만적 사랑으로 구성된 부부관계의 침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신히 사적 관계에서나마 성립된 평등한 남녀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 평등한 남녀관계를 보증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여성권리 확대의 발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친밀감을 전제한 성관계를 특권화 하는 것.
- 친밀감과 결합된 성관계만 인정하고 그 밖의 관계를 부정할 만큼 이상적인가? 낭만적 사랑에서 남녀가 동반자적 관계라고 하지만 여성과 남성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다름. 여성은 혼신적인 역할을 남성은 지지받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김. 이는 생계 부양하는 남성과 가사를 전담하는 여성이라는 성별분업의 이상이 반영된 것으로 상호보완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를 은폐함. 또한 연애나 결혼에서 성을 거래하는 속성을 내포함. 그리고 연애와 결혼에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함. 친밀감과 결합된 성관계를 특권화하여 성매매에 낙인을 찍을 이유가 없음.
-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어차피 여성의 성이 거래되고 있으니 성역 없이 거래하자는 의미가 아님. 성매매는 결혼이든 동일한 맥락에서 여성의 성이 거래되는 구조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운동을 기획하자는 주장. 착취 없는 노동을 지향하듯, 상품으로 거래되지 않는 성을 지향하는 것임. 그리고 여성의 성이 거래되지 않는 사회에서 새로운 성윤리를 형성해야 함. 남녀가 상호 존중 하며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곧바로 사랑하는 연인과 남편과의 일대일 관계로 등치되지 않을 수 있음. “자주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우리의 상상 속에 여성과 남성이 성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갖고, 동등하게 참여하고, 좋고 싫음을 말할 권리가 있고, 억압과 죄책감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이상적인 세계에서는 매매행위가 불필요하지 모른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불평등과 불공정함에 대해 밝히고, 문제제기하고 대면하고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1997년 인도 ‘제1차 전국 성노동자회의’ 선언문 중)
- 성매매를 ‘거래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성상품화를 지양하면서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상

품화에 대한 반대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마찬가지. 노동착취를 지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 스스로가 집단적 권리주장을 하는 것처럼, 성 상품화를 지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성들 스스로의 집단적 권리주장이 필요. 성매매 처벌하고 성판매 여성을 구출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음.

### ○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억압.

- 여성에 대한 구조적 억압이란 간단히 말해서 여성의 경제적 종속과 성적인 제약이라고 할 수 있음. 공적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형식적 평등이 달성되었으나, 여전히 남성에게 부양되는 존재로 여겨지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야 함. 예를 들면 여성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반찬 값 버는 아줌마로 취급당해 저임금을 받고, 살림하고 애도 키워야하기 때문에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결국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짐. 한편 성에 대해 관대한 세상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되는 잣대는 다름. 단적으로 성구매 남성은 별로 지탄받지 않으나 성판매 여성은 더러운 창녀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남성은 성적 쾌락의 주체지만,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임. 여성은 남성의 쾌락의 대상이거나 적자생산의 의무를 위해 정조를 지켜야하는, 즉 몸에 대한 여성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성적인 제약을 받는 현실은 여성의 성을 거래되도록 만듦. 예나 지금이나 남성에게 의지하지 않는 여성 대다수는 사회적 지위가 낮고 가난.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은 독립적인 삶을 위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해 생존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성매매로 유입되는 여성의 경우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빚이 있는 경우가 다수고 학력도 낮음. 성매매가 여성빈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큰돈을 벌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여성은 가난하고 아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매매로 유입. 성매매는 오늘날 만연한 성 상품화, 그리고 대다수 여성의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 덧붙여 생계형 성매매가 아닌 여성들, 반드시 사회경제적 취약여성들이 아니더라도 성판매에 나서면서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태도는 구조적 억압에서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음. 성매매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일시적이고 단기적 돈벌이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여성들은 절대적 빈곤 때문이라기보다 상대적 빈곤 또는 여타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성매매에 유입됨.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은 생계형 성판매 여성들과 달리 구조적 문제와 무관한 손쉬운 돈벌이에 나선 사람들인가?
- 오늘 날 사회가 소비 욕망을 엄청나게 자극하고, 여성의 성공과 자기실현을 외모로 압축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여성은 자신을 가꾸기 위한 소비욕망 등을 위해 성판매에 나서는 것을 구조와 무관한 일로 치부할 수 없음. 다른 한편 노동시장에서 남성들에 비해 성취 가능성은 낮고 그에 따라 수입도 낮은 현실에 더해 만연한 성 상품화로 인해 성적 자원의 활용이 더 용이한 현실을 감안해야 함. 그리고 여성의 노동의 상당부분에 이미 성적인 자원을 활용할 것을 요구받는다는 현실에서 성매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

“저는 오히려 바에서 일할 때 제 일이 싫었어요. 서비스 업종은 대부분 성노동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성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돌도 노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섹슈얼리티를 전시하잖아요. 성적 대상화라든가 섹슈얼리티를 파는 것 아닐까요. 성노동도 노동임을 긍정하기 시작하자, 직업의 귀천을 가르는 게 자본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였구나 생각했죠.”(나는 성매매를 선택했다. 한겨례21)

## 2> 성판매 여성에 대한 관점

### ○ 자유로운 거래이므로 동등한 지위의 거래 상대인가

- 성매매를 성적인 사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대등한 성인 남녀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취급할 수 없는 이유를 노동자와 유비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동등한 거래상대일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음.
- 노동자는 개인적으로 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장에게 대항함.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장하는 것임. 마찬가지로 성노동자 역시 구매자와 포주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므로, 스스로 권리보장을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집결지 같은 곳에서 성노동자들이 포주에 대항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성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 탈 성매매 할 권리 등을 단체협약으로 체결 할 수 있어야 함. 물론 알선자 없이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형법이나 상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성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결하고, 형법과 상법의 도움을 받으려면 비범죄화가 전제조건임. 성노동자가 범죄자 신분이라면 주와 구매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구매자가 폭행하거나 돈 떼어먹은 사실을 신고할 수도 없음.
- 이처럼 비범죄화는 성노동자에 대한 법 제도적인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 오히려 일반 시민으로서 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폭력적이거나 변태적인 포주와 성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과 인신매매, 강제적 구금, 폭행 등 극단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주장함.

### ○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면?

-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실시되고 단속이 강화되자, 생계곤란에 직면한 성매매 여성은 집단으로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했을 때 날아왔던 시선. 피해자라면 법의 도움을 받아 당장 떠나면 되지 왜 시위를 하는 것이냐, 너무 착취당해서 치료가 필요하거나 포주에게 매수당했구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창녀들에게 지원이 왜 필요하냐.
-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창녀라는 낙인을 제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피해자는 현실을 개선하는 주체가 아니라 한시바삐 성매매를 탈출해야 하는 사람이고, 창녀는 어떠한 요구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되기 때문.

“언니들은 그런 단체가 “너희는 사회의 피해자이다. 앞으로는 성매매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싫대요.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직업이 사람의 전부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성단체들은 우리의 직업만을 가지고 우리 전체를 판단한다고 언니들은 불평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래요. 우리가 성매매를 하니까 그나마 굶지 않고 살 수 있고,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우리도 공부할 수 있다, 이거에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언니들이 진정 주체적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 ○ 성노동자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성노동자라는 규정의 의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팔지 않고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노동력 판매를 강제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 것처럼, 성이 상품이 되어 거래되는 현실에서 하나의 노동 형태 중에 여성들이 성 판매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성노동이라는 규정을 채택하더라도 성매매 합법화나 영원불면의 것이기에 옹호한다는 것과 구분되어야 함. 마치 가사노동이라는 규정이 여성의 가족 내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가시화 시키고 이를 여성에게 전가하지 않는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처럼. 성노동이라는 규정이 성매매의 현실을 드러나고 인정하며, 성이 거래되는 구조를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하자는 의미.
- 성매매 여성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임. 성 상품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그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매매만 단속하고, 남성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한계. 또한 성매매 여성 이 피해자니까 당장 그만둬야하는 선택지밖에 없다면 성매매를 떠나지 못하는 여성은 자발적 성매매라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가령 노동자가 착취당한다고 해서 즉각 그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음. 억압적 현실을 노동자 스스로 자각하고 집단적 힘을 모아 노동조합을 만들어 현실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꾸는 운동을 함. 성매매 역시 여성이 억압과 착취에 놓여 있다고 해서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음. 여성 스스로 이중규범, 성 상품화, 성별분업,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등 현실을 자각하고 이를 바꾸는 것이 필요.
- 특히 성매매 여성에게 부과된 낙인은 인권침해의 원인.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몸을 파는 창녀는 강간을 당해도 싸다는 통념이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여성은 일체의 권리를 부정당함.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은 포주와 남성 구매자의 횡포에 저항할 수 없고, 외부의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성매매를 떠날 수 없는 현실을 성매매 여성 스스로 고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그러한 여성의 목소리는 사회가 그녀들에게 부과한 ‘창녀’라는 낙인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낱낱이 폭로하는 의미. 성매매 여성 스스로 자신은 건전한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죄자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더러운 여자도 아닌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임을 주장하는 것이 성매매의 구조적 원인을 드러내는 첫 걸음이 될 것.

## 3>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처벌에 대한 입장

### ○ 공창제는 왜 문제인가

- 성매매 합법화는 성욕에 대한 인간의 본성상 성매매가 사라질 수 없으므로 국가에서 관리하여 양성화하자는 주장. 성매매 여성도 불법의 위험을 감수하느라 폭력조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성구매 남성 역시 성병에 감염될 위험이 작아지므로 모두에게 이롭다는 논리.
- 하지만 역사적으로 성매매의 국가 관리는 결코 여성을 위해 고안된 제도가 아니었음. 19세기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성병을 통제하기 위해 성매매 등록제를 실시하고, 성매매 여성의 검진을 의무화. 이는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군대에 성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성을 구매하는 남성에게는 성병 검진 의무가 없었고,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제. 이러한 통제조치는 성병 대책으로 그다지 효과가 없었지만,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은 해악적. 특히 영국의 경우 감염사실이 밝혀진 여성은 치안판사의 심문 없이 6개월간 구류에 처해지기도. 경찰은 성매매 여성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난한 여성 대부분을 성매매 여성으로 분류해서 강제적으로 검진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음. 또한 일시적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떠나려했던 여성이 국가에 등록됨에 따라 전업화되기도. 이처럼 성매매를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중규범을 강화하여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효과를 강화.

- 합법적인 성매매 지역을 만드는 것도 문제. 관리지역에 속하지 않은 성매매를 불법화하기 때문. 허가된 업소나 격리 지역의 성매매 여성은 폭력조직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제한적 권리 를 누릴 수 있겠지만, 비허가 업소나 지역에서 성매매 여성은 더욱 위험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큼. 성매매를 정부가 규제하는 공간 내부로만 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음성화의 폐해도 나타남.
- 합법적 규제는 성매매 여성은 일반 여성과 분리시키고 전업화하는 결과를 초래. 성매매 여성으로 등록했던 기록이 남으면 다른 직업을 찾기가 어려움. 또한 공창으로의 격리를 통해 성매매 여성은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창녀라는 낙인이 강화될 위험에 처함. 그리고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창 밖의 여성은 불법화됨. 결국 성매매 여성의 지위는 나아지지 않음.

### ○ 성판매여성만 비범죄화 하는 문제

- 성판매자가 성매매에 유입된 계기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성판매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그러나 성매매 여성은 보호 받고 구제되어야 할 피해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문제.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로 보는 시각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탈성매매 의지가 없는 여성은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고, 쉽게 돈을 벌려는 타락한 여자라고 비난 받게 함. 피해자라면 응당 현재의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부한다면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 피해자에게는 동정의 눈빛을 보내겠지만, 성매매를 지속하려는 여성에게는 창녀라는 낙인이 남게 됨.
- 문제는 남성 구매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가난한 여성은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 강압이나 인신매매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선택하는 여성은 많음. 구매자를 처벌한다 해도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생계가 해결되지도 않고, 성매매에 유입될 가능성은 창출하는 여성 빈곤 문제 역시 해결하지 못함.
- 확고한 성별분업 아래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저임금 비정규직을 할당하고 있는 현실이 가난한 여성은 성 판매로 몰아감. 또한 이러한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여성은 다른 직업을 선택해도 생계를 꾸리기 어려움. 정부에서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역시 충분하지 못함. 다른 직업을 찾아 성매매를 그만둔 여성은 생계 곤란에 직면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 ○ 앰네스티는 왜 비범죄화를 지지하는가?

#### 1. 국제앰네스티는 왜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대개의 경우 성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매우 미미한 보호를 받고 있다. 실제 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과 학대는 경찰과 성매수자 그리고 성매매에 관여하는 제 3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파푸아뉴기니 수도 모트모르즈비 (Port Moresby)에서 6개월간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성노동자 중 50%가 성매수자와 경찰

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 2. 합법화와 비범죄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성노동 합법화를 요구하지 않나?

성노동의 비범죄화는 성노동자들이 성노동을 해도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성노동자들은 더 이상 법의 바깥으로 내몰리지 않게 되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만약 성노동이 합법화된다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노동을 규제하는 매우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할 것이고 이런 규제는 또 다른 운영 방식을 야기해, 결국 규제를 피한 성매매로 성노동자들은 다시 처벌 받게 될 수 있다. 반면, 성노동의 비범죄화는 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에 대해 스스로 더 많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독립적으로 스스로 협력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그들의 노동환경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다수 성노동자들은 비범죄화를 지지했지만 합법화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었다. 단순히 사법당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합법화 모델이 도입이 될 경우 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인권침해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범죄자 혹은 공범으로 다뤄지지 않아야 경찰의 공격적인 태도와 위협이 줄어들고, 경찰의 보호를 요구하고, 보호 받을 수 있다. 비범죄화는 노동자들에게 권리가 되찾아주는 것이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제앰네스티가 합법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법이 성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기를 바라고 있다.

## 3. 성노동 비범죄화가 인신매매를 조장하지는 않나?

국제앰네스티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인신매매는 배척해야 할 인권침해 행위로 국제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정책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노동을 비범죄화한다고 해서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성노동 비범죄화에 따라 인신매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인신매매와 싸우는 데에도 성노동 비범죄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성노동을 비범죄화하면 성노동자들은 더 잘 협력하여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더 나은 노동조건과 기준을 만들며, 기업화된 성매매와 잠재적인 인신매매 가능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노동자들이 처벌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 경찰 등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인신매매를 가려내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찾아낼 수 있다.

## 4. 성노동 비범죄화는 어떻게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나?

국제앰네스티가 제안하고 있는 이번 정책은 여성 성노동자들을 더욱 보호하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노동자들의 인

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역할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은 여성들이 성노동에 종사하게 되기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문제를 으례 있었던 일로 치부하지 않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성노동을 선택한 이들을 처벌하고 형법을 적용하거나 경찰을 동원해서 이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다.

성노동자를 처벌하면 그들 자신이 내린 선택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진다. 이번 정책은 성노동을 비범죄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가가 단지 생존을 위해 성노동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성과 소외된 계층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들을 제안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복지 수당, 교육 및 훈련, 대체 일자리 등 적절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고 성노동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요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님을 밝혀둔다.

#### 5. 성노동에 관한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제앰네스티가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준비하는 데 2년이 걸렸다. 이번 정책은 폭넓은 단체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탄탄한 조사와 협의에 기초하고 있다.

#### 6. 성을 파는 사람들(성매매여성)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포주’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정책은 “포주(pimps)”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성노동자를 착취하고 유린하는 제 3자는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에 따라 여전히 처벌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창촌 유지” 혹은 “촉진”에 반대하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들이 있다. 이 법들은 종종 성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리하게 사용되거나 그들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마저도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성노동자가 안전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은 “집창촌”으로 간주된다.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이 촉구하는 바는 성노동자를 처벌하고 그들의 삶을 위험에 빠트리는 단속을 일일이 하기보다는 착취와 유린, 그리고 인신매매 행위들을 막는데 법의 초점이 다시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 7. 왜 국제앰네스티는 ‘노르딕 모델(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가?

노르딕모델에서 성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성을 구매하거나 성을 팔기 위한 장소를 임대해주는 것과 같은 운영은 여전히 처벌대상이다. 이렇게 타협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성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에 취약한 상태에 남겨진다. 성노동자들은 여전히 형법을 적용하여 성노동을 없애려는 의도를 가진 경찰들에게 쫓길 수 있다.

현실에서는 성매수를 금지하는 법 때문에 구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성노동자들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많은 성노동자들이 국제앰네스티에 구매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도록 구매자의 집으로 방문해 줄 것을 요구 받는다고 말했다. 성노동은 노르딕모델에서도 여전히 큰 낙인 찍혀 있으며, 이 낙인으로 인해 차별받고 소외 당하고

있다.

## ○ 뉴질랜드의 성매매 비범죄화

- 뉴질랜드는 2003년 성매매법을 개정하기 전에 성매매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나 ▲호객행위 ▲업소 운영 ▲성매매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행위 ▲성관계 알선행위 행위들은 법률 위반 사안이었음. 이러한 법안은 1)호객행위 금지로 성노동자는 체포될 수 있지만, 고객의 접근은 보호되는 이중기준 문제가 있음. 2) 성매매업소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불법. 이로 인해 업소의 성노동자들은 운영자의 횡포에 취약함. 성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벌금을 물리고 급여지불을 유예하는 관행이 흔하고, 원치 않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기 어려웠음에도 업소가 불법이라 시정요청하기 어려움. 게다가 콘돔이나 성관계에 관한 문서가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여 안전한 섹스정보와 관련 물품의 확산을 제약.
-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2003년 성매매법을 개정함. 목표는 ▲성매매를 비범죄화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착취로부터 보호 ▲성노동자들의 복지와 직업 안전 및 건강을 증진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창출 ▲성매매와 관련해 아동을 착취로부터 보호.
- 업소 운영자와 성노동자 사이의 권력 불균형 및 업소 운영자가 성노동자에게 성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존재함. 성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몸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성노동자들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
- 성노동자의 복지와 직업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성매매를 범죄화한 현행 법률을 제거하고 다른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체계 내에 성노동자들을 포괄. 작업장에 따라 성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맺거나 독립적인 계약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함. 독립적인 계약자가 아닌 성노동자들은 고용관계법률에 의해 포괄. 고용인들에게 고용관계법 상의 의무를 부과. 독립적인 계약자들은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를 법원과 분쟁조정법정에서 받을 수 있음.
- 고용관계 내의 보건 및 안전 법률은 작업 장소를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것은 고용인과 독립적 계약자, 건물 내에 있는 여타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함. 성매매 개정안도 안전의 책임을 업소 운영자에게 부여함. 이는 폭력적인 고객을 제어하고, 성병예방 기구 피임기구 콘돔 등의 사용을 통해 성감염질환 위험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함.

=> 성매매에 대한 어떤 유형을 취하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성매매자를 처벌하고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는 가택성매매가 양산되고, 허가된 업소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거리 성매매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음. 어떤 정책을 행하든 간에 성매매를 완벽히 근절하거나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 또한 성매매에 대한 규율 방식과 무관하게 여성빈곤, 특히 여성실업 등의 요소가 인신매매의 정도와 범위에 꾸준히 영향을 미침.

성매매 정책은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매매의 형태를 억제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 그런 의미에서 성매매 관련 법률안을 상대화시킬 필요. 그럴 때만이 성매매를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개별 행위자들의 행위들로 다루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지배, 착취, 폭력의 문제로 다룰 수 있기 때문.

### 3. 성노동자 운동의 역사와 현재

#### ○ 윤락녀/ 피해자/ 성노동자

-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집결지 중심의 대대적인 단속 시행. 미아리텍 사스 성판매 여성들과 업주들이 법 시행 유예기간을 요구하며 시위 시작. 10월에는 전국 12개 지역 성노동자 3천여 명 국회 앞 시위. 12월 소복농성 돌입.
- 집결지 업주들 모임인 ‘한터전국연합’ 산하에 ‘한터전국여종사자연맹’ 결성. 그러나 2005년 3월 업주모임 하부조직에서 벗어나 성판매여성 독자조직인 ‘전국성노동자 연대 한여연’(전성노련) 결성. 스스로를 성노동자로 규정함.
- 2005년 8월 평택 집결지 성판매 여성들 전성노련 탈퇴하고 ‘민주성노동자 연대’민성노련 결성. 전성노련에서는 성노동자라는 공통의 인식이 공유되지 못해 내부 차이 극복에 역량 소모가 커서 독자조직을 만듦. 한편 평택 집결지 업주들이 성판매 여성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려 하자 ‘한터전국연합’에서 거부. 그리고 대부분 세입자로 구성된 평택 업주들은 집결지 재개발에 반대하는 반면, 대부분 건물 소유주인 한터전국연합은 재개발로 인한 이득 때문에 입장을 달리했기 때문. 이들은 ‘민주성산업인연대’라는 독자조직 결성.
- 민성노련은 약 220여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하였으며 평택지역 성노동자였음. 조합원의 가입은 위원장이 각 업소마다 방문하여 단체협약과 조합규약을 읽어주고 여기에 동의하면 회비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짐. 생존권과 노동권 쟁취를 목표로 한다는 12대 강령을 발표하고,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함.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성노동자운동을 알리는 활동에 주력함.
- 민성노련의 주요 입장은 ① 성적 자기결정권으로서 성노동을 주장. 성노동을 사회양극화의 산물인 빈곤의 결과라고 인식함.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는 성노동의 다수가 왜 여성인지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재. ②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성노동자로 스스로를 규정. 성노동은 많은 노동 중 하나일 뿐이며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규정을 거부. ③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목표로 삼음. 이 법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때문. ④ 비범죄적 규제주의를 목표로 삼음. 비범죄주의와 규제주의를 절충함. 평택 집결지와 같이 성노동조합이 단협을 체결한 지역은 합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비범죄화 하자는 것. 그러나 집결지만 합법화 하는 것은 다른 성노동을 불법화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성판매 여성들이 낙인이라는 명예를 감수하고 특정지역에 남지 않을 것이며 업주들 역시 비범죄화 지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합법화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음. ⑤ 성구매자 처벌에 반대함. 생계를 위해 성판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자극 범죄화하면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
- 2009년 민성노련 거의 와해 됨. 거점인 평택 집결지가 철거에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생계를 위해 활동을 계속 할 수 없었기 때문.
- 성노동자 권리모임지지가 2009년 결성. 20여명 정도의 회원 규모. SNS를 활용한 여론전과 및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단체협약서

## [전문]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이하 조합)과 민주성산업인연대업체(이하 연대업체)는 상호 이해와 신의 성실의 원칙 밑에 노사 공동의 번영을 이루하고, 조합원의 복지 증진 및 합리적인 성산업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하며, 조합과 성산업인단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 제 4 장 근무시간 및 휴일 휴가

### 제20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으로 정한다

### 제21조(휴 일)

월 4일로 한다.

### 제22조(휴 가)

조합원의 휴기는 다음과 같다.

1. 하계휴기는 최소 3일 이상으로 한다.
2. 연차휴기는 년간 12일로 한다.
3. 생리휴기는 월간 1일로 한다.
4. 경조휴기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사망 6일
  - (2) 조부모, 형제자매상 3일
  - (3) 백숙부모상 3일
  - (4) 부모회갑, 칠순증 택일 2일
  - (5) 부모탈상 2일
  - (6) 자녀사망 4일
  - (7) 형제자매결혼 1일
  - (8) 외조부모상 2일
  - (9) 조부모탈상 2일

## 제 5 장 기 타 사 항

### 제23조(가불금)

조합원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연대업체로부터 가불한 금액은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여타 방식으로 변제한다.

### 제24조(인권보호)

성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 제25조(초상권 보호)

성노동자들의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위해 성산업인들은 최선을 다한다.

(고객들의 휴대폰 카메라 등 사용에 의한 초상권 침해를 말함)

### 제26조(건의함)

영업 지역내에 건의함을 설치 운영한다.

### 제27조(근무일수)

월 2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 12대 강령

성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시민권자다. 또한 성노동자는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은 성매매 특별법 등으로 인해 억압받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12대 강령을 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 [ 강령 ]

1.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투쟁한다
2.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3.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인권유린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4. 성노동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5. 고객인 남성을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6. 성노동자와 정직한 성산업인간의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7.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이 개입된 범죄적인 성매매 행위에 절대 반대한다
8. 성노동과 탈 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 성노동자를 억압하는 반인권 악법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10. 민주적인 성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1. 성노동운동의 대의와 취지에 공감하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한다
12. 한국사회의 급진적 여성주의를 개혁한다.